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

의 안 번 호	

동의연월일 : 2014. 6. 24.

동 의 자 : 의 장

주 문

가.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, 남북관계 정상화와 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「국회법」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「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한다.

나. 위원 수는 18인으로 한다.

다.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안이유

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로켓발사 및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경색을 해소하고 남북교류협력관계의 정상화 및 발전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여 위하여 지난 2012년 및 2013년에 이어 여·야 합의로 「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하려는 것임.